

# 2021년 제3회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

금정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,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‘아이돌봄지원사업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21년 제3회 신규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 □ 응시자격

- 금정구 거주자에 한함(2021. 8. 17. 이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자)
-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하며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- 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
### 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(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6조)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- 7:00~9:00, 15:00~20:00 활동 가능자 (필수)
- 1일 평균 2~4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 가능자
- 영아(만 36개월 이하) 돌봄 활동 가능자 (우대)
- 이동거리(금정구 내)에 제한이 없는 자
- 컴퓨터 사용 가능자 (시스템 활동일지 등록 등)
-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(양성교육 면제)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  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  -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## □ 모집개요

구 분	일 정
공고기간	2021. 8. 17.(화)~2021. 8. 31.(화)
접수기간	2021. 8. 17.(화)~2021. 8. 31.(화) ※ 2021. 8. 31. (화) 18:00 이후 접수 불가(마감)
모집인원	00명
제출방법	<p>1.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care.idolbom.go.kr">https://care.idolbom.go.kr</a>) 접수 ▶ 회원가입→지원 및 양성→모집공고→2021 금정구 아이돌보미 3차 모집 클릭→지원신청</p> <p>2. 홈페이지 접수 불가능자 -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 센터 방문 제한 (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우편접수 가능 : 8월 31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▶ 주소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, 2층 (우 46216) 금정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</p>

## □ 제출서류

-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(홈페이지 첨부파일)
- 개인정보동의서 1부(홈페이지 첨부파일)
- 주민등록등본 1부 (2021. 8. 17. 이후 발급, 지원자 본인 정보 외 불필요)
-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1부
  - ※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④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자만 해당) 1부

## □ 전형절차

- 1차: 서류심사
- 2차: 인·적성검사 ※ 2021. 9. 3. (금) 예정
  -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- 3차: 면접심사 ※ 2021. 9. 13. (월) 예정
  -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  -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, 인성, 능력, 건강 등을 심사 (봉사성, 유사활동 경력, 양육 경험, 자질 및 인성,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, 건강 등)
- 최종합격자 발표
 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 제출

-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(‘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’이라는 문구 포함)검사 포함
-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(홍부방사선 검사, B형간염 등)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,

## □ 향후 일정

- 오리엔테이션: 2021. 9. 16. (목) 예정
  - 사업설명 및 양성교육 일정·현장실습 안내
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(결격사유 조회용)
  - 급여통장 사본 1부 지참
  - 최근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매 (3.5cm x 4.5cm)
-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
  - 양성교육 일정: 2021. 10. 5. (화) ~ 10. 21. (목)
  - 교육방법: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
  - 내용: 일반과정(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),  
 자격증소지자과정(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)
    - 교육출석률 90% 이상일 경우 교육수료 인정
    - 교육비: 일반과정 20만원, 자격증소지자과정 2만원  
(센터계좌로 입금)
- ※ 일반과정교육비 환급: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
- 현장실습 : 2021. 11. 1. (월) ~ 11. 30. (화) 중 1인당 20시간 필수!
- 활동시작 : 2021년 12월 이후
  - 1일 2~4시간 이내 단시간 근무(대기가정 수에 따라 차후 추가 연계될 수 있음)

## □ 아이돌보미 직무

-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 
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
- 시간제(기본형)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 
 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고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(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,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)  
 -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- 시간제(종합형)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  
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

**□ 아이돌보미 근무시간 및 수당**

- 아이돌보미 근무 시간 : 1일 8시간 이내, 1주 40시간 이내
- 아이돌보미 급여 : 아동 1명 기본 8,730원
  - ※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해 퇴직금 적립, 4대보험 적용
- ★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

□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

□ 기타 문의사항 : 금정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(☎051-532-0077)

2021. 8. 17.

**금정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**